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요령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I. 재허가 계획

1. 개요 및 대상 사업자

- 방송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2. 재허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 접 수 처 : 우)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11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 02 - 750 - 2459)

3. 재허가 기준 및 허가증 교부

- 심사결과, 6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재허가를 '거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건부 재허가'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재허가 심사 종료 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게는 허가증을 교부하고, 재허가 거부 대상 사업자에게는 청문절차 등을 별도로 진행함

4. 유의사항

- 재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주지하며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할 것
- 과실 및 고의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그 책임이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

II. 재허가 심사 내용

1. 심사 방향

- 허가기간 동안의 운영 실적 및 조건 이행 여부, 향후 사업계획 평가

2. 심사 절차

가. 신청서류 접수

-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나. 재허가를 위한 사전 행정처리

- 시청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청취
 -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방송통신위원회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관보 게재
 - 재허가 대상 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통한 자막고지
- 신청서류 보완
 -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제출 서류 징구 및 보완사항 통보
- 결격사유 조회
 -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에 대한 방송법 제13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사
- 현장실사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실시

다. 재허가 심사

○ 방송사업 심사

- 재허가 심사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의견청취

- 청취내용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과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의 구체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석대상 :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다액 출자자 등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방송국 기술심사

- 기술기준 등 적합 여부 심사

라.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위원회의 방송사업 심사 결과와 기술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허가 여부 결정

마.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 재허가(허가증 교부) 또는 재허가 거부 통보, 심사결과 공표

3. 심사기준 및 항목별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지표	배 점
1.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계량	400
2.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비계량	1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120
4.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비계량	100
5.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60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비계량	120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비계량	50
8.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비계량	50
9.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계량	감점처리
합 계		1,000

※ 심사항목별 세부항목과 배점기준, 감점처리 기준은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함

Ⅲ.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1. 신청서류 구성 및 제출부수

○ 재허가 신청서류

- ① 신청공문
- ②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
- ③ 종합유선방송사업 운영실적서
- ④ 서약서
- ⑤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증 사본
- ⑥ 종합유선방송사업 운영실적서 보충자료
- ⑦ 종합유선방송사업 사업계획서
- ⑧ 첨부서류

※ 첨부서류는 본문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운영실적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되, 가급적 분량을 최소화함

- 재허가신청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13부**와 해당내용이 들어 있는 CD 2개를 제출함
 - 첨부서류는 2부만 제출(첨부서류 표지에 “첨부서류”임을 명기하고, 원본은 “원본”, 사본은 “사본”임을 표기)

2. 작성요령 일반사항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술하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함

-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함. 다만, 기술·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특정 부분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문기관 등을 밝혀야 함
 -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경우, 신청서류 표지 다음 장에 자문을 받은 분야와 기관을 명시함

-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함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로 작성하고 A4용지를 사용하며,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야 함

- 운영실적서 및 사업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함

- 운영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안쪽 면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원본과 동일함”과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사본의 경우 겹표지 오른쪽 상단에 ☐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3),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입

IV.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1.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서

- 재허가 신청서는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가. 허가내용

- ⑫ 기타 허가의 주요내용 : 허가증 상의 부관사항 및 허가증 교부 시 부여된 조건을 상세히 적시

나. 법 또는 허가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1)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2)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별첨”으로 표기 후 사업운영실적서 7-4 관련법령 준수여부에 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다.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1) 사업수지견적 : “별첨”으로 표기 후 사업운영실적서 1-2 사업수지견적 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 2) 역무제공내용 : “별첨”으로 표기 후 사업운영실적서 2. 역무제공 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 3) 수신자 불만처리 : “별첨”으로 표기 후 사업운영실적서 8. 시청자 불만처리 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라. 방송시설 배치 및 개요

- 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 운영실적서

○ 작성 기본지침

- ② 전화번호 : 대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괄호() 속에 재허가과 관련된 실무부서 책임자 직통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포함)를 병기함
- ⑤ 사업종류 :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만 기재
- ⑦ 허가일자 : 신청일 현재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허가증 발급일자를 기재
- ⑨ 송신내용 : “법령에 의한 다채널 종합방송”으로 기재
- ⑭ 전송선로 미설치지역 : 전송선로 미설치 지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명읍·면·동 단위로 표기하고 관련 세부내용을 사업운영실적서 5-4. 전송선로 미설치 지역 및 미설치 사유 부분에 기재
- ⑮ 송신시간, ⑯ 주요송신내용, ⑰ 자체제작·송신 : 지역채널의 1주간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 ⑲ 지역내 다른 유선방송과의 관계
 - 1) 지역내 타 중계유선방송이 없을 경우 :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2) 지역내 타 중계유선방송이 있을 경우 : “별첨”으로 표기하고, 관련 세부내용을 운영실적서 6.중계유선방송 통합 부문에 기재

3. 서약서

- 서약서는 첨부한 양식에 의거 작성
 - 날짜는 재허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함

4. 허가증

- 신청일 현재 최근 발급 허가증 사본 1매

5. 종합유선방송사업 운영실적서 보충 자료

5-1. 일반현황

가. 법인개요

- 소재지, 방송구역, 법인설립일, 자본금/주식발행수를 양식에 따라 기재
- 대표자, 임원, 편성책임자, 광고책임자 각각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가족관계증명서는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만 제출)

나. 사업수지건적

구 분		200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0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1년 예정 (전년대비 증감비율)
요약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요약 손익계산서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영업수익			
재무비율	방송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			
	영업비용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			
재무비율	당기순이익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			
	노동생산성			
재무비율	자본생산성			
	영업이익률			

-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최근 3년간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재무비율 작성(가입자 현황 및 경영실적 작성과 동일한 기준)

- 사업수지건적은 '방송사업자회계처리및보고에관한지침'(제10조 내지 제11조)을 참고하여 작성

- 영업수익은 방송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
-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하되, 매출원가는 방송 제작비·프로그램사용료·전송망사용료(지침 제11조제3항제1호내지제3호)를 포함하고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감가상각비등(지침 제11조 제3항제4호내지제13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부채비율 =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총자산이익율 = (당기순이익 ÷ 평균총자산) × 100
- 자기자본이익율 = (당기순이익 ÷ 평균자기자본) × 100
- 노동생산성 = (경상이익 ÷ 총인건비) × 100
- 자본생산성 = (경상이익 ÷ 총자본) × 100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 ※ 평균총자산 및 평균자기자본은 각각 '(연초 + 연말) ÷ 2'로 계산
- ※ 인건비의 범위

-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명세서, 제작비명세서 등에 기록된 인건비 계정 과목상의 금액(임금, 임원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
- 퇴직급여에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퇴직급여계정상의 금액
- 복리후생비 계정에 포함된 4대 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금
- 세금과 공과금 등에 포함된 4대 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금
- 비과세급여, 차량유지비, 식대보조, 특별성과급 등의 복리후생비계정의 금액

- ※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 3부 별도제출

○ 주주현황(신청일 현재)

- ① 구성주주의 법인명 또는 성명 :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 ② 유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 비율 %),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출자비율 %), 정부출자기관(정부소유 비율 %), 외국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
- ③ 주요업종 :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
- ④ 특수관계여부 : 구성주주간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 표시
- ⑤ 비고에는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

※ 방송사업자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및 별지 제5호 서식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편성·운영 중인 PP에 대한 편성기준(PP 선택기준) 기술 : 연도별로
기준 변동 구분하여 기술

나.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운영실적

- 지역채널, 직접사용채널 방송실적은 12월 첫째주 1주간(2011년은 작성한 주간)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 직접사용채널 방송실적은 지역채널에서 방송된 동일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내용은 실적에서 제외하고 직접사용채널에서만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
 - ※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에 지상파 또는 PP의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송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첨부
 - 선거방송, 대담·토론 및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란은 예외적으로 연간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 유형별로 작성된 송출시간을 합산(총방송시간, 자체제작시간, 자체비율 등)하여 별도기재
-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방송 현황
 - 허가기간동안(작성일까지) 방송된 전체 목록을 작성
 - 연간 총 방송시간 및 편성편수 기록
- 지역채널 주요 방송 프로그램 현황
 - 지역채널에서 방송된 주요 프로그램의 제목을 기재
- 지역채널 제작인원
 - 임시직 : 정기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지역채널 제작과 관련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함
 - 외주·협력업체 : 사업자의 자체인력에 의해 제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자회사 포함). 해당 사업자의 지역채널 제작과 관련한 외주제작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직원 중 직접적으로 지역채널 제작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함

- 직접사용채널 구매내역 : 직접사용채널 편성 중 구매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

- 지역채널/직접사용채널 제작비 및 광고수익
 - 외주·협력업체에 의한 지역채널이 제작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구입비”만 발생하므로 나머지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표기
 - 직접사용채널의 제작비는 직접사용채널에서만 방송되는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표시. 지역채널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간대를 달리하여 편성·방송하는 경우에는 “지역채널과 동일”로 표기
 - 직접사용채널의 광고수익이 전체적인 광고수익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전체 광고수익과 합산하였음을 별도 표기

- 지자체 거래내역 : 지역채널 송출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거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재

다. 부가서비스 운영실적

- 초고속인터넷, VOD, PPV 등 부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라. 방송상품과 인터넷상품 결합내역

- 번들형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상호할인여부 등 양식에 따라 기재

마. 결합상품의 회계처리 내역

- 고지서 발부내역(별도 및 통합여부), 방송수신료와 인터넷수신료 구분 여부(통합시 어떤 수신료로 책정되는지 여부)

5-3. 운영부문

가. 수익구조(매출원가 구성)부문

- 해당 사업자의 원가(비용)산출 기준을 첨부함
 - 방송사업 영업비용을 구성하는 각 항목이 산출되는 기준이 상이하므로 그 기준에 대한 사업자별 근거자료 제시

나.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내역 : 각 연도별 PP별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금액 합계를 기재(유료PP포함)

- ※ PP명이 바뀐 경우 현재의 PP명(채널명)을 기준으로 작성
- ※ 편성하지 않은 PP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PP를 구분하여 작성
- ※ 2011년의 경우, 작성시점의 실적이 아닌 계약에 의한 2011년말 추정치 기재

다. PP프로그램 사용료 정산방식 :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일괄정산(계약전까지 PP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전년도 기준으로 매월 배분후 계약완료 후 정산 등 자사의 정산방식 기술

라.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액 결정의 기준 (자체제작물, 시청률 등 금액산정의 기준)

- 별도 배분기준 없이 PP와 계약협상 결과에 따라 배분액이 결정되는 경우도 사실 그대로 적시

마. PP프로그램 사용료 외 PP와 거래내역 : 홈쇼핑송출수수료를 제외하고 PP와 거래내역

- 채널편성의 대가가 아닌 광고 등 정상적 거래시 증빙서류(심의필증, 계약서) 첨부

바. 수신료수익 ARPU

- 요금상품별 수신료수익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액)를 월별/연도별로 작성함

	상품명 (승인요금/ 부과요금)	월평균 가입대수	월평균 가입 가구수	월 평균 수신료수익	과금 건수별 ARPU	가입 가구수별 ARPU	비 고
2009년							
	합계						
2010년							
	합계						
2011년							
	합계						

* 과금 건수는 지로용지 발송건수가 아니고, 개별 수상기별 과금 건수임. 일괄 및 단체계약으로 고지서를 통한 발송하는 경우에도 과금 건수는 개별 수상기 기준으로 기재할 것.

사. 각종 투자부문

○ 주요내용

- 구내시설 : 사옥신축·구입, 스튜디오 개축 등 방송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 투자내역 중 전송망, 방송장비 등을 제외한 내용
- 전송망 유지보수와 신규설치/업그레이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합계를 전송망 란에 기입
- 방송장비 : 헤드엔드시설, 방송용 카메라, 비디오 등 유형자산으로 포함되는 내용

○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 현황

- ※ 각종 투자부문 중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투자내역만을 별도로 작성.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 현황은 모두 각종 투자부문에 포함되어야 함

5-4. 가입자 및 전송망 부문

- 지역·가구수(세대수) : 행정안전부 발행 주민등록 인구현황 최신판을 이용하여 읍·면·동 단위로 작성
- 주택수 : 통계청 발행 주택인구총조사 최신판을 이용하여 읍·면·동 단위로 작성
- 홈페이지 = (구역내 가구수 ÷ 서비스가능 가구수) × 100
※ 서비스가능 가구수 : 가입가구수 + 신청 즉시 서비스가능 가구수, 구역내 가구수에서 전송선로 미설치 지역 가구수를 제외한 가구수
- 각 요금상품별 가입자를 유료가구와 무료가구로 구분하여 작성

5-5. 중계유선방송 통합 부문

가. 구역내 중계유선방송 현황

- 신청일 현재 구역내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현황
 - SO가 100% 매입한 경우 “매입”, 협업계약(전송망사용계약을 포함)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경우 “협업”, 기타 SO와 관계가 없는 경우 “경쟁”으로 표기
- ※ 협업계약 또는 전송망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계약서 사본을 첨부
- 중계유선방송 통합실적
 - 2006년 이후 구역내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매입 또는 협업계약 체결한 경우
- 구역내 지사/대리점 설치 현황
 - 구역내에서 SO의 지사 또는 대리점이 있는 경우만 기재

5-6. 공공성·공익성 부문

가. 각종 수상실적

- 허가기간 동안 받은 각종 수상실적을 다음의 순서와 같이 정리하여 기재
 - 훈장·포장
 -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부처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으로부터 받은 표창장
 - 차관급 기관장(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받은 표창장
 - 기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
 - 기타 단체로부터 받은 표창장 또는 감사패, 공로패

나. 지역사회발전 기여현황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

- 허가기간동안 각종 지역사회 기여현황을 다음의 순서와 같이 정리하여 기재
 - 각종 지원금·현물지원(현물지원의 경우 시가 상당으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기재)

다. 사업허가 당시의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 이행결과

- 재허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의견청취, 이행각서 등을 통해 서약한 각종 준수사항 및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
 - 중계유선방송 통합, 경영개선, PP프로그램 사용료 등

라. 관련법령 준수 여부

- 재허가일 이후 신청일 현재까지 방송법 및 기타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다음의 순서대로 기입

- 방송법 위반사항 중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위반사항 중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경고, 주의 처분
- 기타 방송관련 법령(예 :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등) 위반 처분
- 기타 법령(예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조세관련 법령 : 세금 관련 해당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경우 내용 및 조치내용 등) 위반 처분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처분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 첨부

5-7. 시청자 불만처리 부문

가. 시청자 불만처리 절차

- 시청자 불만처리 절차 등을 상세하게 기술(필요한 경우 다이어그램 등으로 설명)

나.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

- 미처리된 시청자 불만 내용 중 각 사별 상위 5대 사유를 적시하고 그 건수 및 비율을 표기

6. 종합유선방송사업 계획서

6-1.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가.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 경영진(이사 및 사외이사) 구성절차,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계획, 경영 감시기구 구성·운영계획 등 기술

6-2. 경영계획

가. 요약 추정 재무제표

-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추정 재무 비율 작성

- 운영실적서의 사업수지 건적과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
※ 각 연도별 추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각 2부 첨부

6-3. 시설투자 계획

가.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

- 디지털 전송장치 구축, 전송망 설치/업그레이드, 시범서비스 실시, 본 서비스 실시,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 시기 등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6-4. 가입자 및 전송망 확대 계획

- 운영실적서의 해당부분과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

6-5. 구역내 중계유선방송 통합 계획

- 구역내 미통합 중계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매입 중계 유선방송 포함)에 대한 향후 통합계획을 일정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6-6.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운영계획

- 운영실적서의 해당부분과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

6-7.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공성 등 실현계획

가. 2~15번 대역 채널 편성계획

- 향후 5년간 2~15번 대역 채널의 편성계획을 작성. 구체적인 PP명을 기입하지 못하는 경우 PP 공급분야만 기재

6-8. 기타 재허가과 관련된 주요 사항

가. 투자금/대여금/차입금 현황

-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타 법인에 대한 투자금, 대여금, 타 법인으로 부터의 차입금 현황을 상세히 기술

<첨부서류 >

- 본문에서 첨부토록 한 첨부서류는 재허가 기간 동안의 감사보고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별도 책자로 제본하여 2부 제출함
- 각각의 첨부물은 첨부물 앞쪽에 신청서 본문의 해당부분을 명기한 간지(색지)를 삽입하여 찾기 쉽도록 작성함(본문에도 첨부 서류의 몇 쪽에 해당내용이 있는지를 기재)
- 첨부서류의 쪽수는 “첨부 - 페이지번호”로 본문과는 다른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